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리·통장의 임무) ①리·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면·동장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리·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